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2014. 12.



금 용 위 원 회



# 목 차

## I. 총칙

제1조 목적	3
제2조 정의	3
제3조 적용범위	5
제4조 관련법령과의 관계	6

## II.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 제1절 이사회

제5조 이사회의 구성	6
제6조 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	6
제7조 이사회 의장	7

###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8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유형	7
제9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8
제1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9
제11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9
제12조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10
제13조 이사회내 위원의 연임 제한	10
제14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10

## III.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 제1절 사외이사

제15조 사외이사의 선임	11
제1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12
제17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12
제18조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13
제19조 사외이사의 임기	13
제20조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14
제21조 사외이사의 역할	15
제22조 사외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15
제23조 사외이사의 책임	15

제24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	16
제25조 사외이사의 보수 .....	17
제26조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지정 .....	17
제27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	18
제28조 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	18
제29조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	18
<b>제2절 최고경영자</b>	
제30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	19
제31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	20
제32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	20
제33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20
제34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	21
제35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	21
<b>IV. 감사위원회</b>	
제36조 기본원칙 .....	22
제37조 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	22
제38조 감사보조조직 .....	22
제39조 상근감사위원 .....	23
제40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 .....	23
제41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	23
<b>V. 보상위원회</b>	
제42조 기본원칙 .....	24
제43조 보상위원회 활동의 서류보존 등 .....	24
제44조 보상과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	24
제45조 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	25
제46조 이연지급 .....	25
제47조 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	26
제48조 현금보상 지급 등 .....	26
제49조 보상체계 재조정 .....	27
제50조 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상의 제한 .....	27
제51조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등 금지 .....	27
제52조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	27

제53조 성과평가 지표 .....	28
--------------------	----

## **VII. 공시**

제54조 정기공시 .....	29
제55조 수시공시 .....	34
제56조 주주총회 .....	34
제57조 공시방법 .....	34
제58조 규준 미준수에 대한 공시 .....	34

## **VII. 금융지주회사등의 특례**

제59조 적용범위 .....	35
제60조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등의 책임 .....	35
제61조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특례 .....	35
제62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특례 .....	37
제63조 보상위원회에 대한 특례 .....	37
제64조 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례 .....	38
제65조 최고경영자에 대한 특례 .....	38
제66조 내부통제에 대한 특례 .....	38
제67조 금융지주회사의 공시에 대한 특례 .....	39
제68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특례 .....	40
제69조 경영의사결정 체계 .....	40
제70조 위험관리체제 .....	41
제71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43

## **부칙**

제1조 시행일 등 .....	44
제2조 내부규정의 정비 등 .....	44
제3조 적용례 등 .....	44
제4조 폐지규준 .....	45

## 지배구조 원칙

- 금융회사는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금융회사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지배구조의 구성·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금융회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 금융회사는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발전과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주요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들 간 능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 및 임원에 대한 신임 및 재임절차를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모든 이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금융회사는 모든 이사가 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이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및 개별 이사는 그 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평가를 바탕으로 이사에 대한 보상 및 채선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적절한 위험감수 요인을 고려하여 보상체계가 건전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등이 위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책임 아래 금융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등에 적용되는 지배구조정책,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제반 의무사항을 승인하고, 적절한 평가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준은 금융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2. “회사”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상법」 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금융지주회사등”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4. “은행지주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5. “임원”이란 이사, 감사, 「상법」 상 집행임원을 말한다.
6. “사외이사”란 「상법」 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7.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8. “이사회등”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9.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10.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특정업무 종사자”란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의 설계·판매·딜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투자금융(IB), 트레이딩(주식·채권·파생상품거래 등) 담당 부서장 및 별도의 고용계약에 따라 담당업무 경상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받는 전문(계약) 직원 등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을 의미한다.
12.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13. “변동보상”이란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외에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

14. 성과연동형 주식보상(Performance share)이란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에 정해진 결정 방법 및 계산식에 따라 일정기간 후 회사가 정한 목표 달성을 정도에 연동하여 행사 가격, 부여 수량, 효력 발생 기간 등이 결정되는 주식보상을 말한다.
15.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란 금융회사가 제54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6. “준법감시인”이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하거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준은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규준을 적용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

## 협업의 혜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제4조(관련 법령과의 관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 규준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규정(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제2장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 제1절 이사회

제5조(이사회의 구성) ① 금융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6조(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6. 대주주·임원 등과 금융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이사회는 주주 및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 및 금융회사의 장기적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8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유형) ① 금융회사는 「상

법」 제393조의2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보상위원회의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장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단서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제3호의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이하 이 조에서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보상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보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위험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포함한다)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2.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규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3. 보상체계가 이 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보상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이하 “연차 보상평가”라 한다)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4.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제45조에 따른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5. 그 밖에 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
- ④ 보상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보상제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심의 및 연차보상평가 실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5. 그 밖에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이사회내 위원의 연임 제한) 사외이사는 보상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은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운

영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2. 최고경영자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3.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4. 최고경영자 후보자 빨굴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5.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6.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항제4호의 후보자 빨굴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 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장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 제1절 사외이사

제15조(사외이사의 선임) 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금융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얹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다른 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와 소속 자회사등간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준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금융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해당 금융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9조(사외이사의 임기) ①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경우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함에 따라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제24조에 의한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동일 금융회사에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지주회사 및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제20조(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 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 일 기준 사외이사 총 수를 말한다)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1항 전단은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사외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사외이사의 책임)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에의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해당 금융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금융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

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금융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이 일정 금액(예: 배상책임액의 20% 이상) 이상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 액의 최대 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계열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금융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제24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활

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1항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을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해당 금융회사와 최근 3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외이사의 보수)**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지정)**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 지원
  3.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  
무 지원
- ③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  
으로 제2항제2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  
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  
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금융회사는 사외이  
사가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  
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 금융회사는 신임 사외이사

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제2절 최고경영자

제3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제3호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예: 30일)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

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규정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여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최고경영자의 자격)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3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

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준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금융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5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금융기관은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예: 최초 선임시 2년 이상)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② 금융기관은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

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 제4장 감사위원회

제36조(기본원칙)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7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청구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38조(감사보조조직)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 ②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금융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정한 인력으로 감사

보조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9조(상근감사위원)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 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감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른 일상감 사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4.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제40조(이사회에 대한 보고) ① 감사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1 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 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상위원회

- 제42조(기본원칙) ①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높은 보상을 위한 과도한 위험 감수(risk taking)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총변동보상액(total variable compensation) 지급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본적정성의 유지 및 확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는 보상체계를 건전하게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

- 제43조(보상위원회 활동의 서류 보존 등) ① 금융회사는 보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내역과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 및 감시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는 보상위원회의 설치근거, 권한과 책임, 위원의 임기 및 활동내역의 서류보존의무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44조(보상과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① 금융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위험 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는 위험 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금융회사의 보상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는 위험 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①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은 변동보상이어야 하며, 개인·해당부서·회사전체 차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변동보상제도는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 현재 및 미래의 잠재 위험을 감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와 비용
2.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의 규모와 비용
3. 당기손익으로 계산된 잠재 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시기의 일관성

③ 금융회사는 회사, 부서, 개인 업무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금융투자업자는 과거 변동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연계하여 부정적인 성과가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확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 성과급중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경영진과 특정업무 종사자의 변동보상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6조(이연지급)** ① 금융회사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예: 40~60%)은 수년간 이연지급(deferral)되어야 하며, 변동보상의 비율은 직위, 근무연수, 책임의 정도 등과 연동하여 증가되어야 한다. 특히, 최고경영진과 고액연봉 특정업무 종사자의 경우 이연지급되는 변동보상의 비율은 상당수준 이상(예: 60%이상) 이어야 한

다.

② 이연지급 기간은 영업의 성격 및 위험과 경영진·특정 업무 종사자의 활동과 연계하여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연하여 지급되는 변동보상 부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pro rata basis*)보다 커서는 안 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의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연지급 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① 금융회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진 및 특정업무종사자의 변동보상 중 상당 부분(예 : 50% 이상)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회사가 비상장법인이고 소속 지주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지주사 주식관련 상품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최소 보유기간(이연지급기간을 포함한다)을 설정하는 등 그 행사가 적절하게 유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외에도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성과연동형 주식(*Performance Share*) 등의 주식연계상품을 포함하여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장기성과급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현금보상 지급 등)** ① 이연지급된 보상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다.

② 지급확정기간(vesting period) 중 금융회사 전체, 소속부서 및 개인의 업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보험회사 및 금융투자회사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지급 미확정 부분(unvested portions)은 실현된 손실규모(보험회사 및 금융투자회사는 실현된 부정적 성과를 말한다)를 반영하여 환수되어야 한다.

제49조(보상체계 재조정) 금융회사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상체계를 건전한 위험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하여야 한다.

제50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상의 제한) ① 금융회사의 보장형 상여금(guaranteed bonus)은 건전한 위험 관리 또는 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래의 보상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② 금융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상으로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위험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등 금지) 금융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상체계의 위험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일반직원의 보상체계) ① 금융회사는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이윤분배제도, 종업원지주제 등 직원보상과 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 보상제도 등을 금융회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직무 가치와 능력을 직원 임금체계 결정 기준에 반영하고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여 임금지불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성과평가 지표) ① 금융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장기성과와 수익성 관련 지표를 중심지표로 설정하여 최종 평가와 연계하고, 위험 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의 반영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별도 기준에 근거하여 보상하는 부서는 예외로 한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기예측, 금융회사별 특성 등에 맞게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조정하여야 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판대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포함할 것
2. 고객만족도 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고객만족도 평가를 정기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할 것
3. 수익성 평가 시 단순한 절대 손익 및 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평가지표를 적용할 것

4.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순이익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손익을 제거한 영업이익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성과를 반영할 것
  5.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고객만족도의 증진, 위험 관리 등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우수 인적 자원의 확보 및 개발 등과 같은 인적 자원 지표를 반영할 것
  6. 수익성 및 건전성 관련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상 제도를 활용할 것
  7. 내부목표 달성을 외에도 시장성과를 반영하는 등 금융회사 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할 것
- ④ 금융회사는 단기적 외형과 매출 확대를 지양하고, 수익성과 건전성의 조화, 고객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점 성과평가지표를 설정한다.
1. 금융회사의 장기적 수익성과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표를 구성할 것
  2. 예적금, 펀드,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 취급시 구속성 행위, 과장광고, 불법모집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건수, 대응체계 구축, 해당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행 정도 등에 대한 세부평가 지표를 개발·적용할 것
- ⑤ 금융회사는 보수 산정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장 공시

제54조(정기공시)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

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본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 회사 내부기관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 회사 내부기관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시 선임에 대한 이유
3. 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후보 추천 개요
  -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
  - 라. 사외이사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 마. 사외이사 후보와 해당 금융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 바. 관련법령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 아.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자.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
- 차.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 파.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 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금융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제1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제23조제7항의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등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바. 사외이사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의 제공 현황

- 카.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적용한다)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와 제안자와의 관계
- 다.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 라.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마.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 바. 이사회가 정한 임원후보추천관련 사항

#### 7.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 8.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보상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보상체계 의사결정 절차
- 나.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 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 다. 다음 세항의 보상에 관한 총계 정보와 금융회사의 위험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및 특정업무종사

## 자 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

- (1). 회계연도 중 보상액(고정 및 변동 보상액 구분, 수급자 수)
- (2). 변동보상 금액 및 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
- (3). 이연된 보상액(지급확정 및 지급불확정 구분)
- (4). 이연된 보상액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성과 조정에 따른 지급액 및 축소액)
- (5). 회계연도 중 신규 고용자에게 지급한 보장성 상여금 액, 해당자수 및 1인기준 최고 지급액
- (6).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관련 보상금액, 해당자수 및 1인기준 최고 지급액
- (7).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액

## 9.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10.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 수
  - 나.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11.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12.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변동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상은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 ③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수시공시) ①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3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등을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향후 공시 날짜, 자연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시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6조(주주총회)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57조(공시방법)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준에 따른 공시는 금융회사 및 금융업권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여야 한다.

제58조(규준 미준수에 대한 공시) 금융회사가 이 규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과 그 이유(법령상의 특례적용 사유, 주주총회 의결 사유 등) 이 규준을 따르

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7장 금융지주회사등의 특례

제59조(적용범위)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제외하고 이 장의 규정을 다른 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0조(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등의 책임) ①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등은 금융지주회사등이 조직구조, 영업 및 관련 위험 관리에 적합한 지배구조 정책과 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등은 자회사등의 이사회에 대하여 독립적인 법률상 및 지배구조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회사등에 대한 적절한 감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등은 금융지주회사등이 노출하고 있는 위험의 성격, 규모, 복잡성을 감안하여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수립하고 위험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1조(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특례)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등은 금융지주회사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라. 해산 ·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지배구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 나.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의 수립 · 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금융지주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원칙, 보상원칙, 보상정책 등 금융지주회사등을 전체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 · 의결사항을 자회사등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자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자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자회사등의 이사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심의 · 의결사항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을 할 수 있다.

제62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 및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자회사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회사등임원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등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회사등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등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자회사등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최고경영자”를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로, “이사회”를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등”으로 본다.

제63조(보상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금융지주회사의 보상위원회는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보상원칙 및 보상정책의 설정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의 보상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를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로, “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의 보상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또는 보상위원회는 제5장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준에 부합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보상위원회는 자회사등의 보상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는 이 규준과 부합하는 보상체계와 내부방침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4조(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위원회의 업무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제65조(최고경영자에 대한 특례) 제62조제1항에 따라 자회사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30조·제31조 및 제33조·제34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사회”를 “금융지주회사 이사회”로, “최고경영자”를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로, “경영승계”를 “자회사등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자회사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제31조의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본다.

제66조(내부통제에 대한 특례) ①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등 전체를 통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가. 금융지주회사등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 나. 금융지주회사등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라.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마.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바.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사.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아.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이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자.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이 경우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지주회사등이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금융지주회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금융지주회사의 공시에 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는 제 54조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통합적인 공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등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28조의 “이사회등의 활동”을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이사회등의 활동”으로 보며, 제37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제69조(경영의사결정 체계) 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에 대한 전략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경영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5조제5항에 따른 주력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2. 경영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
  3. 경영관리협의회 위원장이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때마다 지명하는 사람
- ③ 경영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자문에 응한다.
1.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연간 사업계획
  2.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등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 관한 사항

3.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
4. 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경영관리협의회 위원장이 자회사등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경영관리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70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협의회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 ⑤ 경영관리협의회는 상정 안건명과 주요 논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경영관리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영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0조(위험관리체제) ① 금융지주회사는 위험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
  2. 자회사등별,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의 설정·운영
  3.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의 종류별 측정 및 관리
  4. 자회사등과 연결한 주요 위험 변동상황의 종합적 인식 및 감시
- ②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0조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말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 금융회사별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등의 위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 담당 최고책임자가 업무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 · 임면기준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위험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위험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 담당 최고책임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5조제5항의 주력 자회사의 위험관리 담당 최고책임자
  2. 위험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위험관리 담당 임직원
  3. 위험관리협의회 위원장이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때마다 지명하는 사람
- ⑥ 위험관리협의회는 제69조제4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경영관리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위험관리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1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은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은행 또는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은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542조의10을 준용한다.

③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의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영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2. 경영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회사등

## 부칙

- 제1조(시행일 등) ① 이 규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때부터 이 규준을 적용한다.
- 제2조(내부규정의 정비 등) 금융회사는 이 규준이 시행된 후 이 규준을 참조하여 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체계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에 대한 지배구조체계를 검토·정비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례 등) ①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은 이 규준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규준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19조제4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규준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19조제5항, 제6항을 적용한다.
- ③ 금융회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이 규준 시행 후 최초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제20조에 따른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와 준수계획을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이 규준 시행 당시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23조 제7항제1호과 관련해서는 이 규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폐지규준) ① 사외이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규준은 각각 폐지한다.

1.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2. 「손해보험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3. 「생명보험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4. 「저축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
  5.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 ② 성과보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규준은 각각 폐지한다.
1.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2. 「보험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3.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4. 「금융지주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별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I.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II.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 명(사외이사 00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여부
000 (위원장)		
000		

III.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1. OOO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자 경력	
다. 사외이사 경력	
라. 후보제안자 : OOO	
1)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3) 추천 이유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	

사와의 관계							
2) 대주주와의 관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td></tr> <tr><td></td></tr> <tr><td></td></tr> <tr><td></td></tr> <tr><td></td></tr> </table>						
3) 임원과의 관계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다)							
2) 적극적 요건							
가)							
나)							
다)							
라)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2) 적극적 요건 충족							
3) 현재 겸직 업무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 2. OOO

※ 이하 양식은 위 Ⅲ. 1. 과 동일

< 작성요령 >

1. 'I.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을 위한 내부절차를 상세히 기재
2. 'III.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은 각 사외이사 후보 별로 작성하며, '라. 후보 제안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III. 1. 나. 후보자 경력'은 사외이사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4. 'III. 1. 다. 사외이사 경력'은 후보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일한 경우 근무 기간, 주요 실적 등을 기재
5. 'III. 1. 라. 2) 후보자와의 관계'와 'III. 1. 마. 3). 임원과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6. 'III. 1. 바. 1) 소극적 요건'은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결격) 요건과 후보자의 충족 여부를 기재
7. 'III. 1. 바. 2) 적극적 요건'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과 후보자가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8. 'III. 1.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3) 현재 겸직 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50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근무해야하는 모든 업무 및 당해 업무를 위한 연간 근무시간을 기재
9. 'III. 1.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는 각 위원별 찬반내역을 기재
10. 'III. 1.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결과'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첨부
11. 'III. 1.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제17조제4항에 서 정한 검토보고서를 첨부

[별표 2]

이사회등 및 사외이사 활동내역

I. 이사회등 회차 : 회의일(회의시간) 및 안건 통지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가결 여부 및 각 사외 이사별 찬성 여부와 반 대 · 기권사유)					
나. 2호안건 (가결 여부 및 각 사외 이사별 찬성 여부와 반 대 · 기권사유)					

II. 이사회의 연간 누적 활동내역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시간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목표	실적
000												

\* 개최 · 참여란에는 횟수를 기재(해당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하고, 활동시간에는 간담회 실적 등을 포함

## 하여 기재

### III.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사외이사 성명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2. 누적 교육 시간(총 00시간)						

\* '2. 누적 교육 시간'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 후 참석한 교육·연수시간을 합산하여 기재

### IV.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다)		
2) 적극적 요건		
가)		
나)		
다)		
라)		

\* 별표 1.의 비교 6.과 7.의 기재방식 참고

### V.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등에 기부금등 지원내역

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기부한 금융회사 사 <sup>2)</sup>	지원 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sup>1)</sup>		보고내용 <sup>3)</sup>	과거 5년간 <sup>4)</sup>
000		000 ( )	0000 ( )		
		000 ( )	0000 ( )		
000		000 ( )	0000 ( )		

- \* 1) 해당 법인등의 수탁자 또는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를 기입하고, 팔호안에 사외이사와 관계를 기입
- 2) 기부한 금융회사란의 팔호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지원하지 않고 계열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등이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의 관계를 기입
- 3) 제23조제7항에 따라 보고한 기부금등을 기재하되, 영업상 목적으로 비영리법인등에 제공한 기부금등은 제외한다.
- 4) 공시일 기준 과거 2년간 지원실적(제23조제7항에 따른 기부금등을 말하되, 영업상 목적으로 비영리법인등에 제공한 기부금등은 제외한다)

[별표 3]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내역

I.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II.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 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여부
000 (위원장)		
000		

III.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

1. OOO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자 경력

다. 후보제안자 : OOO
1)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3) 추천 이유

라.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다)		
2) 적극적 요건		
가)		
나)		
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 작성요령 >

1. 'I.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는 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을 위한 내부절차를 상세히 기재
2. 'III.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은 각 최고경영자 후보 별로 작성하며, 'III. 1. 다. 후보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III. 1. 나. 후보자 경력'은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4. 'III. 1. 다. 2) 후보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5. 'III. 1. 라. 1) 소극적 요건'은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소극적(결격) 요건과 후보자의 충족 여부를 기재
6. 'III. 1. 라. 2) 적극적 요건'은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7. 'III. 1.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는 각 위원별 찬반내역을 기재